

4단계 BK21심리학교육연구단

-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

제 1 장 총 칙

제정: 2021. 3. 1.

일부개정: 2021. 5. 1.

일부개정: 2021. 12. 1.

일부개정 : 2022. 3.1.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1절 일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이하“본교”) 4단계 BK21 (이하 “BK21”)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과학 교육연구단 (이하 “연구단”)의 교육, 연구, 인사, 장학 및 사업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① “4단계 두뇌한국(BK) 21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을 말한다.
- ② “운영”이라 함은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단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

제3조 (사업기간)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 ② 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재정 및 회계 연도) ① 이 연구단 재원은 정부로부터 4단계 BK21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과 대학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

- ②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에 따른다.

2절 교육연구단 구성 및 운영

제5조 (연구단 구성과 운영조직) ① 연구단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박사후과정 및 연구교수)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

- ② 연구단은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단의 장(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③ 연구단은 연구단장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단장의 자격과 임기) ① 연구단장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전임교수이다.

- ② 연구단장의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연구단장의 의무와 책임 및 권한) ① 연구단의 운영에 있어 대학본부(총장/산학협력단장)와 유기적 연계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참여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연구단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 ③ 연구단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 ④ 연구업단 운영을 위한 안전에 따라 연구단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⑤ 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 ⑥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비 분배와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 예산집행의 최종결정 권한을 갖는다.
- ⑦ 연구단장은 연구단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연구단장 및 사업참여교수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내규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의 예산과 연구단 내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연구단 예산, 결산의 구성에 관한 결정
 2.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참여교수와 참여학생의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급 결정
 4. 참여교수와 참여학생의 구성에 관한 결정
 5. 신진연구인력의 구성에 관한 결정
 6. 행정직원 임면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1.12.1.>
 7.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1.>
- ④ 운영위원회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체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하되, 구성원의 변경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참여 인원 선발 및 운영

제 1 절 참여대학원생

제9조 (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②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기간 동안 전일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참여학생의 연구 교육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그 참여학생의 지도교수에게 있다.
- ④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⑤ 운영위원회는 참여학생의 연구 교육활동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참여학생 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1. 모든 연구단 지원 학생들에게 매 학기 말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2. 수행결과가 우수한 참여학생에 대한 성과급 지급
 3. 수행결과가 현저하게 저조한 참여학생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피드백 지원
- ⑦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신설 2021.12.1.>

제10조 (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 ②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학기별로 연구장학금을 신청하고, [별표]에 기재된 평가 기준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적으로 우수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12.1.>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21.12.1.>

1. 각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박사과정생 1인과 석사과정생 2인**을 선발한다. 단, **박사과정(박사수료)생과 석사과정생 간에는 서로** 대체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2. 추천받은 학생의 수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에 따라 추가 선발할 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우선 선발한다.

가.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나.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다.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라.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제11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12.1.>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70만원 이상 지급 가능)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30만원 이상 지급 가능)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급 가능)

② 4단계 BK21 사업에서 지원받는 학생이 휴학, 유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전에 통보해야하고 일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1.>

제12조(의무) ① 지원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연구단 주최의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② 연구단장은 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장학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개연구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외체류 (해외여행, 휴가 등)가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1.>

① 삭제 <2021. 12. 1>

② 삭제 <2021. 12. 1>

③ 삭제 <2021. 12. 1>

④ 삭제 <2021. 12. 1>

제14조 (인센티브) ① BK연구단 주최 및 추천행사에 적극 참여한 학생과 학술연구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에게 예산 내에서 [별표2]의 기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 당 최대 연 200만원 이내로 제한함) <개정 2021.12.1.>

② 인센티브의 지급절차,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1.12.1.>

제 2 절 참여교수

제15조 (참여교수의 자격 및 의무와 권한) 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수로서 교육부로부터 4단계 BK21 참여교수로 허락된 자로 한다.

②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③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참여교수는 연구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 ⑤ 참여교수는 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연구단장에게 건의할 권한을 갖는다.

제16조 (참여교수의 선발기준)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연구단 참여교수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연구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교육/연구 실적, 산학 협력 실적, 연구단 기여도를 고려한 [별표3]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③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평가 및 평가대상 기간) 평가항목 및 대상 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평가는 연구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교육부의 BK21 연구실적 환산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자체평가안의 기준을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4단계 BK21 사업 개시 후 최근 3년 간의 자료를 근거로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제18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연구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연구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4]에 따르고 결과에 따라 상위 3명 내외 차등 지급하되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 3 절 신진연구인력

제19조 (선발 기준 및 활용) ① 박사후과정생 및 연구교수의 신규 채용은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여, 대학과 학과의 임용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계약조건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본부의 관련 규정 범위를 따르고, 그 기간 동안 논문실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임용기간 동안 연구에 전념하여 SCI(E) 혹은 S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발표를 위해 매진하며, 자체평가 및 결과보고서, 4단계 BK21 사업의 보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을 담당하고 참여 교수의 직접적인 연구 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연을 수행한다.

제20조 (임무와 권리) ① 연구교수의 업무는 본교 전임교수에 준하며 소정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한다.

- ② 연구교수는 교수회의 의결권이 없으며 학내보직을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연구단 내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외부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④ 연구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연구단의 교육·연구 수행에 적절한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⑥ (연구중단조치)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한다.
1.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된 경우
 3. 타기관에 취업하여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개정 2021.12.1.>
 4. 본인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연구단에서 지원중단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삭제 <2021. 12. 1>
 5. 질병 등 기타 심신장애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1.>
- ⑦ (퇴직 시 처리할 업무) 퇴직 시에는 퇴직의사를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구단(팀)장은 사직서를 첨부하여 4단계 BK21 사업지원팀과 교무팀에 통보한다. 퇴직일자를 기점으로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신진연구인력의 당해 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연구단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5]에 따르고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당해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기타) 신진연구인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단에서 따로 정한 바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1.>

- ① 삭제 <2021. 12. 1>
- ② 삭제 <2021. 12. 1>
- ③ 삭제 <2021. 12. 1>
- ④ 삭제 <2021. 12. 1>
- ⑤ 삭제 <2021. 12. 1>

제 4 절 산학협력전담인력

제23조(자격)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24조(산학협력전담직원의 정의) 산학협력전담직원이라 함은 산업수학과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협동과정 에 소속된 참여 학생들의 취업연계·현장실습·산학공동과제, 참여교수의 연구 수행 지원 등 산학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임용절차)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단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1. 연구단장 추천서
 2.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제26조(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임무)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3조에 정의한 연구단 내의 산학협력업무에 전념한다. 단,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28조(처우)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4단계 BK21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해촉)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이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제6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단장은 총장에게 해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 5 절 행정직원 <신설 2021.12.1.>

제29조의2(행정직원 처우 및 성과급) ① 행정인력의 급여 및 인센티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인센티브는 행정인력 업무 기여도 및 기타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할만한 상황의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1.>

제 3 장 국제협력

제30조(국제협력 지원비)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계절학기, 국제학술회의 참가, 장단기 연수 및 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제학회 지원 및 단기해외 연수 <개정 2021.12.1.>

1. 국제협력경비 집행 인정기준

가. 4개국 이상 참여

나. 구두발표 총 논문이 10건 이상

다.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국내인 경우 1/3 이상)

2.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1인당 최대 250만원/회 범위 내에서 학회 개최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동일 학생에 대한 지원은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1.>

3.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대학여비 기준)은 주저자 (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2.3.1.>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개정 2022.3.1.>

5. 학회 참가 전 참가신청서 및 부실학회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Boarding pass,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6. 모든 참여대학원생들과 참여교수들은 연구단 홈페이지에 제공된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가이드’를 참고할 의무를 가지며, 학술대회에 등록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당 학술대회가 약탈적 학술대회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함. <개정 2022.3.1.>

7. 지원대상자는 지도교수 추천으로 수시로 평가하여 지원하며, 예산에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개정 2022.3.1.>

② 장기해외연수 <개정 2021.12.1.>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기 해외 연수 대상자는 [별표6]의 기준으로 신청자의 실적과 연수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1.12.1.>

2.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대학여비 기준)이며 최대 1인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하여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1.>
 4.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대상자는 학회 참가 전 참가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연수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Boarding pass,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 ③ 해외학자초청
1. 해외학자 초빙은 BK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학자의 학술적 우수성 및 초빙 사유의 연구단 목표 적절성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초청 연구분야에서 저명한 해외학자(정교수급)을 초빙하며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학생을 집중지도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숙박비, 회의비 포함 실비 및 자문료[교내강사료 지급기준을 따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초빙계획서에 강연방식과 사유를 명시할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문료[교내강사료 지급기준을 따름]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4.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비용은 대학의 전문가 활용 지침, 여비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 4장 연구지원 공모전

제31조 (참여자격) ① 참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인력 개인 혹은 참여인력이 포함된 2인 이상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 ② 참여인력은 학문간 협업 및 교류를 위해 타학과 학생 및 교수, 학부생, 수료생, 졸업생 및 일반인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참여교수의 단독참여는 불가하며 학생과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제32조 (연구비) ① 공모전에서 선발된 팀은 팀당 200만원 내외에서 연구비를 실비로 지원하되 선발팀 수와 지원규모는 제안서의 내용과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② 연구비는 국내여비, 설문조사비, 자료 분석비, 논문게재료, 학회참가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BK 연구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동 연구를 진행할 시에는 교육연구단 사업비에서 100%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다.
- ④ 실험참가자 사례비는 현금. 현금 등가성 품목 (기프트콘, 문화상품권 등) 및 현물의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시간 당 최저 임금 기준에 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구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신설 2022.3.1.>

제33조 (시상) ① 공모전에 선정된 팀의 결과에 따라 수상팀에게 상금이 수여될 수 있고, 상금규모는 매년 예산과 선정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상금은 참가자 실명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장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출장) 국내출장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국내출장 여비 산정은 BK21지침에 따라 대학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국내출장은 학회참석 및 연구협의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으나 국내출장신청서, 학회프로그램일정, 초청장, 출장과 관련된 메일 및 승차권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강연료) 대학의 전문가 활용지침을 따르고, 전문가 초청 강연료 지원서, 강의사진, 이력서, 강연자료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회의비) 회의비 집행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연구단 자체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7조 (지원) 학회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국제학술대회의 진행경비는 국제화 경비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기념용품 등의 제작은 불가하다.

제38조 연구단의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4단계 BK21사업 사업비 카드 혹은 계좌이체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의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1.12.1., 개정 2022.3.1.>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2020.9.1.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며 4단계 BK21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및 기타 안내사항 등에 따른다.
3. (규정변경) 이 내규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기타사항) 이 내규의 시행과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내규로 정한다.
5. (해산) 이 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이 완료되는 날로 해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2조, 제30조, 제38조 개정, 제29조의2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30조, 제32, 제38조 개정)

별 표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석사/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개정 2021.12.1.>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기간
지도교수 추천 기준 (*타 연구비와의 중복 지원은 최대한 배제)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의 질적 우수성 및 연구단 주제 관련성 (50%)	3년
	학업 및 연구 역량	학업 및 연구 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 (30%)	
	인성	공동연구 역량 및 연구실 문화 향상 기여도 (20%)	

[별표2] BK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기준 <개정 2021.12.1.>

평가항목	세부 사항	실적기간
BK 교육연구단 참여도	BK 교육연구단 주관 사업, 공모전, 행사 참여도 및 수상 실적 (40%)	1년
연구성과	국내/외 출판된 논문 성과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성과 (60%)	1년

학회 발표, 논문실적, 학회 참석은 실적기간 동안의 성과들만 인정하고 인센티브 지급은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총합한 뒤, 높은 순서대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

[별표3] 참여교수 선발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참여교수 연구성과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SCI(E), SSCI급, 국내학술지 논문의 질적/양적 평가 (40%)	사업개시 후 최근 3년
대학원생 지도 업적	교육연구단 전일제 대학원생 수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 (30%)	사업개시 후 최근 3년
산학 협력 실적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사업화 및 창업 실적 정부, 민간 연구비 실적 (20%)	사업개시 후 최근 3년
연구단 기여도 평가	연구단 기여도 (대외활동, 위원회 활동 등) (10%)	사업개시 후 최근 3년

[별표4]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참여교수 연구성과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SCI(E), SSCI급, 국내학술지 논문의 질적/양적 평가 (40%)	최근 1년
대학원생 지도 업적	교육연구단 전일제 대학원생 수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 (30%)	최근 1년
산학협력 실적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사업화 및 창업 실적 정부, 민간 연구비 실적 (20%)	최근 1년
연구단 기여도 평가	연구단 기여도 (대외활동 등) (10%)	최근 1년

[별표5]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연구 실적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SCI(E), SSCI급, 국내학술지 논문의 질적/양적 평가 (50%)	최근 1년
연구단 기여도 평가	연구단 기여도 (대외활동 등) (30%)	최근 1년
산학 협력 실적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사업화 및 창업 실적 정부, 민간 연구비 실적 (20%)	최근 1년

[별표6] 장기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 <개정 2021.12.1.>

선발 기준	1. TOEFL iBT 100점, 토익 850점, Teps 400점 이상에 준하는 영어 실력 증빙 2. 최근 3년 이내 국제 학회 발표성과 (4점) 3. 최근 3년 이내 SCI급 논문게재성과 (6점)
-------	---

